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양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양 산 시 장

1. 사업기간 : 2021. 1월 ~ 예산소진 시까지
2. 사업량 : 15가구 예정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3. 사업비 : 42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시비 120백만원)
4. 지원대상자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공고일 기준 양산시에 거주**(양산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 중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
 - 나. ‘가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자)중 **공고일 기준 양산시에 거주**(양산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선정 함.
 - 다. ‘나’항의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한 것임.

※ 최저주거기준(국토교통부 공고 2011-490, 2011. 5 . 27)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¹⁾	실(방) 구성 ²⁾	총주거면적(m ²)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K는 부엌, DK는 거실겸부엌, 숫자는 침실을 뜻함.

라.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지 않음.

5. 지원내용

가. 대상주택

-임대기간 30년이상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붙임1 국민임대주택 현황】**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의2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나.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20백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지원

6. 지급시기

가. 임대보증금 지원액의 지급 시기는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함으로써 지급

나. 보증금 입금시기는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 일정에 맞추어 입금 조치

7. 지원기간

가.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함

나.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함(최대 6년간 지원 가능)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 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양산시(주민생활지원과)에 제출
 - ※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하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신청
- 나.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의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다. 지원대상자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선정됨

9.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 관리

- 가. 본 사업 신청 시, 신청자와 양산시 간에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초신청일부터 지원금 최종 반환일까지 지원금에 대한 채권을 양산시에 양도하게 됨.

10. 임대보증금 납부

- 가. 지원대상자의 확약서를 제출받은 경상남도과 양산시는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 비율(도비 30%, 시군비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함

11. 임대보증금의 관리

- 가.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수급 자격 중지, 계약해지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함

12. 임대보증금의 회수

- 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함

13. 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0년 1월부터

※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나. 신청장소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양산시 중앙로 39)

다. 신청방법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 직접방문 신청(근무시간 내)

라. 신청서류

- ①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식 3부(별지 1~3호)
- ②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 ③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④ 최저주거기준미달 주택거주 증빙서류(사진 등)
- 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4호)

14.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 접수는 선착순 접수이며,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 할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함.

나.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택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신청하여 입주자로 확정되어야 함.

라.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함.

15. 문 의 처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055-392-2474)

【붙임 1】

양산시 관내 국민임대주택 현황

아파트 명	위치	규모		준공 년도	임대 기간	형별세대수(전용면적,㎡)						비고
		층수	세대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소계	12개 단지		10,585			1,528	3,337	0	3,347	1,829	342	
양산 물금3	양주로 153	10~15	1,008	2005	30년	0	0	0	484	384	140	
양산 물금7	양주로 58	13~18	1,260	2008	30년	0	554	0	706	0	0	
양산 대석	상북면 양산대로 1360	12~15	961	2009	30년	0	571	0	240	150	0	
양산 평산	배움터길 11	15	1,385	2010	30년	564	476	0	225	120	0	
양산 금산	동면 금산2길 12	13~15	1,300	2011	30년	0	450	0	700	150	0	
양산 소주	번영로 435	8~15	937	2011	30년	382	208	0	234	113	0	
양산 가촌	물금읍 가촌로 155	12~15	700	2012	30년	0	352	0	228	120	0	
삼성 파크빌	두전길 42	18	601	2001	30년	0	0	0	0	601	0	
신도시 1단지	물금읍 청운로 41	9~15	1,105	2016.3.	30년	408	366	0	140	191	0	
신도시 2단지	물금읍 물금2길 50	11~15	452	2016.3.	30년	174	88	0	190	0	0	
신도시 5단지	물금읍 새살로 54	17~20	472	2016.6.	30년	0	272	0	200	0	0	
한일 유엔아이 아파트	평산로 116	13~25	202	2008.6	30년	0	0	0	0	0	202	

【별지 제3호서식】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인

- 성명 : (인)
- 주소(목적물) :
- 주민등록번호 : -

채권양수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양 산 시 (양산시 중앙로 39)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아래 표시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채권의 표시 : 일금 원(₩ 원)
시 동 번지 소재 임대아파트 동 호 임대보증금 중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및 양산시가 무이자 지원
한 금액 일체. (도비 원, 시비 원)

※ 양도·양수 계약 체결 목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 용자지원금 원금 보전

20 년 월 일

채권양도인

- 성명 : (인)
- 주소(목적물) : 시 동 임대아파트 동 호
- 주민등록번호 : -

채권양수인 대표

- 양산시 (양산시 중앙로 39) (인)

(※ 양수채권의 권리는 위 채권의 표시금액 비율에 따라 경상남도와 양산시에 있음)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위 채권 양도인은 20 . . 일자로 채권양수인 대표인 양산시에게 다음 채권을 전액 양도하였는바, 채권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민원사무의 명칭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지원신청

2. 개인정보 동의 여부

개 인 정 보	동 의 여 부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초)본	○
무주택세대주조회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 무주택 여부 조회)	○

3. 이용기관의 명칭 : 양산시

본인은 위 지원사업의 신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양 산 시 장 귀하